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912-01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17. 9. 2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7. 9. 22.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이 익 현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나 채 준(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왕 승 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수 홍(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농업·농촌 현장에서 농업법인과 유사한 조직체와 농업법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중 협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을 마련할 필요
 -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분야 협동조합에 대해 농업법인으로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국회 등 외부요구가 존재함.
 - 이에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농업법인 인정과 관련하여 법적 정합성 등을 검토
- 더불어, 영세농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농업법인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 농업법인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 상법(12) 개정 이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또한 유한책임회사형태로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법인형태 선택의 폭을 확장
 -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검토 등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농업법인제도 활성화 유도
 - 농업법인 관련 법령개정(15.7월)을 통해 농업법인 설립통지 부활(15), 실태조사 정례화(3년) 등 농업법인 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설립등기(법원)와 사후관리(지자체)가 이원화된 문제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법인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및 법령 체계 정합성 정비 등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농업법인을 활성화하여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농업법인제도의 분석 및 문제점 검토

- 농업법인제도 개관, 운영 및 관리 현황 조사 및 분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농업법인의 개념, 설립 요건, 설립절차, 사업범위 등 농업법인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
- 농업법인제도 분석 및 관련 법령체계 조사 및 분석
- 농업법인제도의 문제점 검토
 - 농업법인의 설립,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단계별 법률체계 분석 및 법체계상의 문제점 발굴

□ 외국의 입법례 검토

- 외국(일본, 프랑스)의 농업법인 운영현황과 제도에 대한 사례조사 및 분석
 - 각국의 농업법인 종류와 사업범위, 운영 현황, 설립요건, 설립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관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운영 현황 등 분석
- 외국(일본, 프랑스)의 농업법인 관리 및 운영정책과 제도에 대한 사례 조사 및 분석
 - 농업법인제도에 대한 국가의 정책 방향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일본, 유럽 국가 중 농업분야 법인에 대한 제도현황, 세제혜택, 농지소유, 육성계획 등 비교
- 외국의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의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도출
 - 각국의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 내실화 방안에 관한 규정 및 정책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규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발굴하고, 농업법인 운영 내실화에 필요한 시사점 검토

□ 농업법인 설립 상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농업법인의 정의 및 기준 설정
- 농업법인 중 유한책임회사 도입 검토
- ‘협동조합기본법’ 상 설립된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농업법인 인정 타당성
 - ‘협동조합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및 기타 관계법령 간 상충 가능성 등 체계 정당성 분석
 - 농업법인의 외연확장 관련, 행정비용과 입법효과 비교 등 합리적 입법을 위한 대안 제시

□ 농업법인의 운영상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설립 형태, 조직변경 등 농업법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2012년 상법의 개정으로 동업자 조합 등의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 형태로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형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 농업법인 사업범위 정비 등 농업법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농업법인으로서 타당한 사업범위의 범주를 검토하고, 추가적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 농업법인의 새로운 사업범위 모색
 -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포함하여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발굴

□ 농업법인 관리 효율화·운영 내실화 방안 제시

- 농업법인에 대한 설립(등기소 등기)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와 이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에 의하면 농업법인의 설립절차가 설립 등기 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소 등기)과 관리(지자체 실태조사)의 이분적 관리체계 개선방향
제시

- 실무영역에서의 부실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 청구 등)방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 검토

Ⅲ. 기대효과

-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상의 제도개선과 농업법인의 관리 효율화·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농업법인제도의 확립과 제도 운영상의 합리화 도모
- 농업법인제도에 관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농업법인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확립하고 입법정비를 통한 선진적 입법에 기여
- 「농어업경영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적 정합성 검토와 미비사항 개선·보완을 통해 농업법인의 운영 내실화 및 관리 감독 효율성 제고

목 차

요 약 문	i ~ iv
제 1 절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제 2 절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분석	2
1. 농업법인 운영현황	2
2. 농업법인제도 개관	3
3. 농업법인 관련 법체계 조사·분석	5
제 3 절 농업법인 관련 외국 제도현황 분석 및 비교	22
1. 일본의 농업법인 제도	22
2. 프랑스 농업법인제도	32
제 4 절 농업법인 제도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48
1. 농업법인 설립 관련, 법령 체계정비방안 제시	48
2. 농업법인 운영 관련, 법령 체계정비방안 제시	74
3. 농업법인 관리 관련, 법령 체계정비방안 제시	75
《 별 첨 》	
1. 협동조합기본법 법체계 분석	83
2. 일본 농지법 조문 해석	93
참 고 문 헌	99

제 1 절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농업법인의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제도적인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의 입법타당성 등을 검토 및 제안함으로써 농업법인의 운영 활성화 및 관리 효율화를 증대할 필요
 -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법체계적인 검토와 이를 통한 농업법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타 국가의 농업법인 제도 구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법인 제도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법인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및 법령 체계 정합성 정비 등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농업법인을 활성화하여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본 연구의 수행은 ① 국내·외 문헌연구 및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수집, ② 농업법인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및 내부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 ③ 과제관련 전문가 그룹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문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숍 개최, ④ 부처 실무담당자와의 자문 및 협의 등의 방식을 통해서 수행하였음
-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국내문헌의 검토와 농업법인제도의 개선을 법학, 농경제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질과 정책반영도를 높이려고 하였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농업법인협회 등 관련 분야 실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보고서의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적용가능성을 제고함.

제 2 절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분석

1. 농업법인 운영현황

- 2014년 말 기준 설립등기(법원)된 농업법인은 44,301개소이며, 그 중 영농조합법인은 34,758개소, 농업회사법인은 9,543개소로 영농조합법인이 전체 농업법인의 78%차지

<표- 1> 2014년 말 기준 농업법인 설립·등록 현황

구 분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소수(개, %)	44,549	33,590(78)	8,959(22)

- 2014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16,482개로 2013년 대비 13.2% 증가 하였으나 설립 등기된 법인의 1/3 수준에 불과
- 2014년 기준 운영 중에 있는 농업법인은 16,482개소(영농조합법인 11,599, 농업회사법인 4,883)로 2000년 5,575개소 대비 약 3배 증가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이 1,667개에서 2016년 지역별 농업회사법인 수가 3,000여개로 증가

<표- 2> 2014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전체	10,867	12,981	14,552	16,482	13.2 %
영농조합법인	8,724(80%)	10,023(77%)	10,792(74%)	11,599(70%)	7.4 %
농업회사법인	2,143(20%)	2,958(23%)	3,760(26%)	4,883(30%)	29.8 %

2. 농업법인제도 개관

(1) 의의 및 연혁

- 농업법인 제도는 UR 대책의 일환으로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전업농 육성과 경영체 육성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어 옴.
 - 영농조합법인: 조합형 법인(인적 결합체)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업적 농업경영조직
 - 농업회사법인: 회사형 법인(자본 결합체)으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하는 자가 설립한 기업적 농업경영 조직
- 농업법인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1990년), 농업법인의 생산자 단체 규정 및 정책자금지원 확대(1994년), 농업법인의 운영자금 성격의 농기업경영자금 신설(1996년) 및 2000년 이후 농업법인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농기업경영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강화, 사업규모 확대 및 사업영역의 다각화, 유망 수출법인경영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영농조합법인 연혁
 - 영농조합법인은 1990년 4월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에서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도화 됨.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의 자립경영 육성을 위해 협업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논의와 정책적 추진이 1960년대부터 있어 왔고,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서 협업적 농업경영 조직에 법적지위를 부여한 것임.
 - 당시의 ‘농업법인제도’는 영세농의 협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이 중심이 되는 농업생산법인으로 제도화된 것으로¹⁾ 영농조합법인의

1) 김수석,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농촌경제 제30권 제4호, 2007, 110면. 초기의 영농조합법

연혁적 시작이 협동조합과 무관하지 않음.

-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를 지향하고, 농업회사법인이 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지향하고 있어서 ‘협업적 농업경영’의 취지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을 기초로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중 한 가지 형태를 택하도록 제도화되었음.

○ 농업회사법인 연혁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지향하고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이 취하는 회사의 형태로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고, 그 가운데 합명회사는 무한책임 회사이며, 합자회사에도 무한책임 사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공동자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법률 규정의 차이가 있음. 농업회사법인은 해당 사단법인이 자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이나 「민법」상의 조합인 영농조합법인은 ‘합유’라는 형태를 하고 있음.²⁾
-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지만 ‘협업’이라는 개념 없이 출발한 농업회사법인은 그 성격이 매우 다름.

(2) 필요성 및 역할

- 고품질·규격생산, 대량거래를 통한 산지유통 강화, 지역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농업법인을 통한 경영체 육성사업은 인적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육성차원의 유리성, 자본조달의 유리성, 경영관리의 효율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개별 농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전반적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경영형태로 평가되고 있음.

인은 그 구성원을 1ha 미만의 농지소유자로 제한하였고, 위탁영농회사는 농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크기를 농가 1호당 3ha 이3내로 제한하였다. 초기의 농업법인제도는 영세농의 협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대규모 기업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2) 민법상의 공동소유형태에는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의 세가지 형식이 있고, 합유의 경우 공동재산가운데 조합원 개인의 지분을 처분하는데 있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분할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 농업법인 관련 법체계 조사·분석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입법 취지 및 목적

-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입법의 목적이 농어업경영체의 육성을 통한 농어촌사회의 안정에 있음.

2) 법령 체계

- 이 법은 제8장 총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법인과 관련하여 제1장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농업법인을 정의하고, 제5장에서 농업법인의 설립과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 법의 법령체계는 다음과 같음

< 표- 3> 농어업경영체법 체계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제6조의2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6조의3 이의신청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3조 자료의 제공방법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3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조의2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조의3 변경 등록대상 정보 제4조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의2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의3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의2 부기등기 등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4조의4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조 조사원의 활용 제7조 증표 제7조의2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9조 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기준 등 제8조의2 후계농어업경영인의 현황 자료
제4장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 합법인의 설립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 합법인의 조합원 등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 합법인의 조직변경 제18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 합법인의 합병·분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 사법인의 설립 등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제20조의2 실태조사 제20조의3 해산명령	제9조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제9조의2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제10조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범위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 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 단체 가입 제16조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 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 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 회사법인의 설립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 의 출자한도 제19조 부대사업의 범위	제11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제12조 영어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제13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제14조 어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0조 정관례의 작성 제20조의2 시정기간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 운영 지원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의 운영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의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 기관 지정 등	제20조의3 대상 정보의 범위 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 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1조의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 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제15조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제16조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제17조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8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제20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 기관의 지정신청
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제27조의3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제27조의4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제21조의3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제21조의4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제21조의5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제21조의6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 경영정보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제22조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 경영정보 등록 제23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 영정보의 변경 등 제24조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 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제25조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 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 사후관리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보칙 제28조 청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3) 농업법인 관련 조항

○ 농업법인 정의

- 동법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규정하면서 농업법인을 동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

4) 영농조합법인

① 개념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② 근거 조항

- 동법 제1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포함) 설립 등을 규정함.

③ 설립 절차

-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한 주요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으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야 되며 의결권이 제한됨.

- 정관 등 작성- 발기인들은 발기인 총회 등을 개최하는 형식으로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고, 기타 총 출자좌수 등을 결정하고, 주식의 납입과 현물 출자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창립총회의 개최 등-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미리 작성한 정관 등의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 외에도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출, 일련의 의결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해야 함.
- 이사회에의 확정 및 출자금의 불입 등 - 이사회는 일종의 임원진들을 의미.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일반 이사 등을 선출함. 총회에서 정한 출자금의 납입을 해야 하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평가를 함.
- 설립등기-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인허가 절차 없이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함.

④ 사업유형 및 경영형태

- 중요한 의사결정은 할 때마다 합의체의 의견을 거치게 됨으로 그 결정의 속도가 느림.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신선한 작물생산 및 저장, 공동선별과 출하 등의 업종이 적합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위험 부담이 큰 편이지만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대표적인 업종으로 축산업, 전통식품을 가공, 비료와 같은 농자재 관련 생산업이 적합함.
- 양자 차이가 있지만 농업사회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모두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관해서는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배당소득세 면제 등은 두 법인에 함께 해당되는 혜택임.

⑤ 조직변경(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³⁾
 -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3)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함.
 -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채권자가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분할⁴⁾
- 영농조합법인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 가능함.
 - 영농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합병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 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함.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영농조합법인이 합병·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함.

4)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

-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채권자가 기간 내에 합병·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봄.
- 영농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5) 농업회사법인

① 개념

- 농업법인의 하나로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함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② 근거 조항

- 근거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제19조에서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포함) 설립 등을 규정⁵⁾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5)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을 준용하고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③ 영농조합법인과 의 차이

-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규정을 따르며,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법을 적용
- 농업회사법인은 축산업, 비료 같은 농자재 관련 또는 전통식품 가공과 같은 생산업에도 적합.

< 표- 4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의 성격 및 형태	협업적 농업경영체 조합	기업적 경영체 상법상의 회사
관련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준용법률	민법상의 조합규정	상법상 회사법
설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 *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출자한도 없음), 준조합원으로 의결권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름 * 농업인 1인 이상(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주식회사 1인 이상), 주주들의 모집에 자유로움.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가 가능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 조합원 모집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개최 → 이사회 의 확정 및 출자금의 불입 → 설립 등기 → 주무관청(관할 시·군·구)에 설립통지	*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제178조, 제270조, 제289조, 제543조에 의거) → 창립 총회 개최(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이사회구성), 설립년도사업계획의 승인 등) → 이사회 개최(대표이사 선임 등) → 출자금의 불입 → 설립 등기 → 주무관청(관할 시·군·구)에 설립통지
농지소유	가능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의 1/3이상 농업인 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의사결정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최대주주가 경영권행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
주주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적합한 업종 유형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 농산물 공동 출하·가공·수출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작업 대행 -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농업경영 -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 - 농작업을 대행할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법인을 인용한 타 법령

-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용어를 포함한 법률조항과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법률조항이 다수 있음.

< 표- 5 > 농업법인의 용어를 포함한 관련 법률 목록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용어 포함 법률조항	‘영농조합법인’ 용어 포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② 간척지의농업적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호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1조 제1,2항. ④ 농수산자조금의구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⑤ 농어촌정비법 제100조 제1,2,3항 ⑥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1,2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호 ⑦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1조의2 제1항, 제11조의2 제4항,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2조 제2, 제43조 제3항, 제58조, 제59조 제2항 ⑧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9조의3 제1항 ⑨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⑩ 농지법 제2조 제3,4호,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3호, 제15조 제4호, 제16조 제2호, 제21조 제1,2항, 제2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3조의2 제1항, 제50조 제2항, 제54조 제1호. ⑪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제2항. ⑫ 식물방역법, 제35조 제1항 제2호. ⑬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8조 제1,4항. ⑭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⑮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척지의농업적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②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5조 제2항 제4호 ③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④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8호 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제3호 ⑦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⑧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호.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제112조의4 제1항. ⑩ 소금산업진흥법 제58조 제2항 제3호. ⑪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6조 제1항. ⑫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2,3,4,7,9항, 제71조 제1항.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26조 제1,2,5,7항. ⑭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제3항 제3호, 제5조 제5항 제2호.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용어 포함 법률조항	‘영농조합법인’ 용어 포함 법률
제1,2항. ⑯ 주세법, 제3조. 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 제1,2항,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⑱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52조 제1,2항. ⑲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5호, 제18조 제1항 제1,2,3호, 제18조 제2,3항, 제19조 제3항, 제24조의3 제1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1)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과 정책 대상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농촌 정책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된 정책 대상들이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활동을 하는 농업분야 조직체와 기존의 농업법인과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법령 체계

- 이 법은 제4장 총 6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법인과 관련하여 제1장 제3조 정의 규정에서 농업, 농어인, 농업경영체 등을 정의하고, 제28조에서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39조에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등의 지원, 제40조에서 농업경영체의 경영 정보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 법의 법령체계는 다음과 같음

< 표-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체계도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제4조의2 농업인의 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p> <p>제6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9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11조의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2조 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p> <p>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시행</p> <p>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5조 정책심의회 제16조 기본계획의 추진 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 보고서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p> <p>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p> <p>제30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제31조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32조 농지의 보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p> <p>제33조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34조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제35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8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제39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40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41조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제42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p> <p>제44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제45조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제46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제47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제47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p> <p>제48조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제49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제49조의2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제50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1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2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3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제54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p> <p>제55조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p>
---	--

<p>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3조의2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p> <p>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24조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29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제29조의2 귀농업인의 육성</p>	<p>제5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제58조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제59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제60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p> <p>제4장 보칙 제6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62조 조세의 감면 제63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제63조의2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p>
--	---

3) 농업법인 관련 조항

○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정의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농업경영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정의
-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함.

○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①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②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③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④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⑤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⑥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등을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하려는 농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3) 농업분야 조직체와 농업법인 비교

1)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동법 제2조)
-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동법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
 -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일반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통상 ‘사회적 협동조합’과 구별하려는 목적에서 ‘일반 협동조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협동조합기본법의 농업법인과 비교는 제4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봄.

2)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의 본래의 취지는 농민조합원의 경제·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권익주장을 대변함으로써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나 농촌지역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한계에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농업법인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에 한계로 농업법인이나 농업분야 협동조합이 나타난 현실을 고려할 때 양자는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양자가 농촌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영농환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업무와 역할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

-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경제적)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의 대상으로 협업적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별되고, 농업회사법인과도 차이가 있음.
- 다만, 농촌지역의 낙후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일부 사업범위나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4) 마을기업

-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함.
- 현재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간단하게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마을기업들이 많이 존재함.
 - 2015년 기준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1,294개의 마을기업이 운영중이며 총 매출액은 1천억원, 약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남.⁶⁾
 -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법인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농촌에서 마을기업의 상당수가 영농조합법인의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나서 협동조합법인 형식의 마을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음.⁷⁾
- 이에 마을기업과 농업법인의 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협동조합과 농업법인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4) 소결

- 농업법인 제도 도입 이후 농업법인의 개소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

6)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top_1000/220484077242.

7)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어 정확한 통계수치는 알 수 없는 상황임.

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업법인의 구체적인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 농업법인은 인적결합체인 영농조합법인과 물적결합체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뉘며, 농업·농촌 현장에서 존재하는 경영조직은 대부분 인적결합체로 영농조합법인과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농업법인과 관련하여 농업분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유사한 협업적 영농경영체 제도를 검토한 바 명칭과 제도적 역할에 있어서 농업법인과 중복 내지 연관성이 있어 향후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 3 절 농업법인 관련 외국 제도현황 분석 및 비교

-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농업법인제도에 대한 정책 및 입법사례를 검토하여 농업법인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 검토

1. 일본의 농업법인 제도

(1) 개관

- 아베정부는 일본재흥전략('13.6.)에서 농정개혁의 큰 틀을 제시한 후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13. 12.)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고, 이후 '산업경쟁력회의'와 '규제개혁회의'의 검토를 거쳐 이를 개정('14. 6.)하였음
-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의 농업 진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아베정부는 이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본 및 노하우 등을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정개혁을 추진 중임
- 2003년 임차에 의한 기업의 농정 진입이 특구에 한해 허용되었고, 이후 2009년부터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임차방식의 농업 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진입 요건 완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일반법인의 농업 진입건수는 연평균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연평균 345개 법인이 농업 분야에 진입하였음
-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건설업 등은 고용유지, 식품 등은 부가가치 향상과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그 밖에 기업이미지 향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현 등이 목적임
- 이처럼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농업 진입을 더욱 촉진하고, 기업의 자본 및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축소되는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견인하려는 목적 아래 2013년부터 농정개혁을 추진 중임

(2) 관련법률(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체계

○ 농지법 체계

< 표- 7> 농지법 체계 8)

<p>제정 : 소화 55년 5월 28일 법률 제65호/최종개정 : 평성 27년 9월 4일 법률 제63호</p> <p>제1장 총칙(제1조-제2조의2)</p> <p>제2장 권리이동 및 전용의 제한 등(제3조-제15조)</p> <p>제3장 이용관계의 조정 등(제16조-제29조)</p> <p>제4장 유희농지(遊休農地)에 관한 조치(제30조-제44조)</p> <p>제5장 잡칙(제45조-제63조의2)</p> <p>제6장 벌칙(제64조-제69조)</p> <p>부칙</p>
--

○ 농업협동조합법 체계

< 표- 8 > 농업협동조합법⁹⁾

<p>소화 22년 11월 19일 법률 제132호/평성 28년 6월 3일 법률 제62호</p> <p>제1장 총칙(제1조, 제2조)</p> <p>제2장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연합회(제3조-제72조의3)</p> <p>제3장 농사조합법인(제72조의4-제73조)</p> <p>제4장 조직변경(제73조의2-제92조)</p> <p>제5장 특정신용사업대리업(제92조의2-제92조의5)</p> <p>제6장 지정분쟁해결기관(제92조의6-제92조의9)</p> <p>제7장 감독(93조-제96조)</p> <p>제8장 잡칙(제97조-제98조5)</p> <p>제9장 벌칙(99조-제103조)</p> <p>제10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104조-제106조)</p>

8) 農地法 (昭和27年7月15日法律第229号)

9) 農業協同組合法 (昭和22年11月19日法律第132号)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체계

< 표- 9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¹⁰⁾

소화 55년 5월 28일 법률 제65호/평성 27년 9월 4일 법률 제63호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농업경영기반의 강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등 제1절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기본방침 및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기본방침 구상(제5조, 제6조) 제2절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사업의 특례 등(제7조-제11조의10) 제3절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제11조의11-제11조의15) 제3장 농업경영개선계획 및 청년등취농계획 등 제1절 농업경영개선계획(제12조-제14조의3) 제2절 청년등취농계획(제14조의4-제14조의12) 제3절 인정농업자 등의 이용권의 설정 등의 촉진(제15조, 제16조) 제4장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의 실시 등(제17조-제27조) 제5장 잡칙(제28조-제34조) 제6장 벌칙(제35조) 부칙

(3) 농지소유적격법인제도

1) 개관

- 농지소유적격법인은 농지법에서 규정된 용어로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가능한 법인을 말함. 농지소유적격법인이라는 종류의 법인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농사조합법인이나 주식회사 중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농지소유적격법인이라고 함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은 ①법인형태요건, ②사업요건, ③구성원·의결권요건, ④임원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농지에 관한 권리취득의 허가신청 중에 요건심사가 실시되고 권리취득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됨

10) 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法（昭和55年5月28日法律第65号）

2)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정의 및 설립요건(농지법 제2조 제3항)

○ 농지소유적격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농지소유적격법인으로 농지에 관한 권리주체가 될 수 있고, 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결한 경우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소유 농지의 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함

① 법인형태요건(동항 본문)

○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 또는 지분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의 총칭)일 것

< 표- 10 > 주식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의 비교

구분	주식회사	농사조합법인
근거법	회사법	농업협동조합법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구성원	개인, 법인 1인 이상	농민 등 3인 이상
사업내용	영리사업에 한정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작업의 공동화/농업의 경영
출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출자의 이행	전액지급	전액지급
지분 자유양도	양도제한 필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의사결정방법	주식총회(원칙: 1인 1표)	정관의 특별한 규정 조합원의 총회의 반수이상의 출석하여 그 과반수로 결정(1인 1표)
조직변경	농사조합법인으로 변경불가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

② 사업요건(동항 제1호)

- 법인의 주요한 사업이 농업일 것

< 표- 11 > 주요한 사업의 농업의 범위

농업	경작·양축·축산 등
농업에 관련한 사업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 농축산물의 저장·운반·판매 농업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제조 농작업의 수탁 농촌체재형(農村滯在型) 여가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농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임업	식림·육림·벌채 등

③ 구성원·의결권요건(동항 제2호)

- 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자에 해당하는 주주의 의결권의 합계가 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을, 지분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자에 해당하는 사원의 수가 사원의 총수의 과반을 차지할 것
 - 그 법인에 농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 혹은 사용수익권(임차권,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지상권, 영소작권)을 이전한 개인 또는 그 일반 승계인
 - 법인에 농지 등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사용 및 수익을 하고 있는 개인
 - 법인의 농지 등을 사용수익하기 위해 농지법 제3조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개인
 - 법인에 농지 등에 대하여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에 근거한 사용 및 수익을 하고 있는 농지이용집적원만화단체 또는 농지중간관리기구에 농지 등에 대하여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있는 개인
 - 법인이 하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 상시 종사의 판정기준(규칙 제9조)
 - 법인에 농작업의 위탁을 하고 있는 개인

- 법인에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7조 제3호에 열거된 사업에 관련된 현물출자를 한 농지중간관리기구
-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④ 임원요건(동항 제3호, 동항 제4호)

- 법인의 상시 종사자인 구성원이 이사 등(농사조합법인에서는 이사, 지분 회사에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수의 과반을 차지할 것(동항 제3호)

3)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 주식회사형태의 도입을 포함한 농지소유적격법인제도의 재검토에 대하여 자산보유목적 혹은 투기·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지소유적격법인의 농지의 권리취득 시 농업위원회 등의 심사의 충실(농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호), 농지소유적격법인의 농업위원회에의 사업의 상황 등을 매년 보고(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업위원회에 의한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권고(농지법 제6조 제2항), 농업위원회에 의한 법인의 사무소등의 출입조사(농지법 제14조 제1항) 등의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됨

4) 농지소유적격법인제도의 보급 등에 있어서 일반적 유의사항

- 사업요건에 대하여
 - 농지소유적격법인이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요건의 충족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법인의 경영관리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농업과 그 밖의 사업 관련 업무를 지도함
- 허가심사 등에 있어서 유의사항
 - 법인이 허가신청 시에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농지 등의 권리의 취득 후의 사업계획, 구성원의 농업의 종사계획 및 이사 등의 농업 및 농작업의 종사계획 등으로부터 볼 때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음

- 이 경우 예를 들면, 그 밖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등으로 볼 때 그 밖의 사업의 대상액의 전망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필요한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뢰성이 있는 계획으로 수정하게 함

- 농업위원회에의 정기보고
 -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보고해야 할 농지 등의 권리가 있는 법인은 그 농지 등의 소유권을 관할하는 농지위원회(해당하는 농지위원회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복수의 농업위원회)에 매 사업년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지소유적격법인에 대한 권고 및 농업위원회에 의한 농지 등의 양도의 알선
 - 농지소유적격법인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 위험이 있는 농지소유적격법인이 자주적으로 그 상태를 시정하도록 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농업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그 권고를 받은 법인이 그 소유하는 농지 등의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가 알선을 함

- 농지소유적격법인이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매수
 - 권고제도에 근거하여 권고를 받은 농지소유적격법인에 대하여 매수해야 할 농지 등의 공시(公示), 법인의 자조노력, 농업위원회의 농지 등의 소유권의 양도의 알선의 기간은 권고의 일(알선의 신고가 있었던 때에는 그 신고일)의 익일(翌日)부터 3개월 간을 함

 - 또한 농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 등의 매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농지소유적격법인이 농업위원회에 의해 시정지도나 그 밖의 농업자의 농지 등의 알선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최종적 수단으로 마련되어 있음

○ 농업위원회의 출입조사

- 농지소유적격법인이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정례보고 등의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청취나 보고만으로는 법인이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 법인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밖의 사업에 제공되는 사업장의 출입조사, 그 밖의 사업의 상황 등을 조사함
- 이 사무소 등의 출입조사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 등에 의해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표- 12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농지관계의 절차

<p>1. 농지의 권리취득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 등의 심사 1) 법인의 조직형태요건, 2) 사업요건, 3) 구성원·의결권요건, 4) 업무집행임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청서의 별지에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사업 등의 상황을 기재하고 정관의 사본, 조합원이나 주주의 구성원명부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 ○ 농지소유적격법인요건확인서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등의 권리를 취득한 법인의 상황을 농업위원회가 파악하고 작성함 - 벌금: 부정한 수단에 의한 허가취득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 제2호) <p>2. 농지소유적격법인의 활동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정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유적격법인이 농업위원회에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보고를 실시함(법 제6조 제1항) - 정관의 사본, 조합원이나 주주의 구성원명부 등의 필요서류의 첨부 ○ 농지소유적격법인요건확인서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보고의 내용이나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에 의한 농지 등의 권리를 취득한 법인의 상황을 농업위원회가 수시로 정리하여 사무국에 비치함 ○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보고를 하지 않았던 자,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30만원 이하의 과료(법 제68조) <p>3.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을 결할 위험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위원회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을 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6조 제2항)

- 농업위원회의 알선
 - 권고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그 소유하는 농지 등의 양도의 신고가 있었던 경우 알선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출입검사의 실시
 - 농지위원회법 제35조에 의한 조사로 요건확인에 농업위원회가 법인사무소 등의 출입검사를 실시함(법 제14조 제1항)
- 농업위원회에 의한 권고나 농지 등의 알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가에 의한 매수조치가 강구됨(법 제7조 제1항)

< 표- 24 > 농지소유자격법인의 형태¹¹⁾



(4) 시사점

- 아베 정부는 농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농업의 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비교할 때 이미 더욱 높은 수준으로 농지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 예를 들면, 일본은 농정개혁을 통해 기업 등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1/2 미만으로 확대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비농업인이 총출자액의

11) <http://www.pref.hokkaido.lg.jp/ns/kei/keiei/kieietai/hojin/hojin/what.htm>

90%까지 출자가 가능하고, 임차기간 역시 일본은 최대 50년으로 제한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에 임차기간 제한이 이미 폐지되었음

- 또한 일본에서도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속성상 농지를 장기간 사용하기 위한 보전 역할이 약화되는 등 농지보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농지보전과 관련된 규제 등은 앞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기업의 자본과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기업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격법인, 농업위원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허용하는 농업특구를 지정하거나 기업이 농업인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A-FIVE)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함
- 농지소유자격법인이 자산보유목적 혹은 투기·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러한 점도 농업법인제도개선에 있어서 입법방향으로 고려하여야 함.
 - 농지소유자격법인의 농지의 권리취득 시 농업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농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호), 농지소유자격법인의 농업위원회에의 사업의 상황 등을 매년 보고(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업위원회에 의한 농지소유자격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권고(농지법 제6조 제2항), 농업위원회에 의한 법인의 사무소등의 출입조사(농지법 제14조 제1항) 등의 농지소유자격법인의 요건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도록 하는 이유에는 농업관련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발전,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 제공이라는 목적도 있으므로 농지를 투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하려는 농업법인에 대한 규제와 관리적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프랑스 농업법인제도

(1) 프랑스의 농업 현황

- 프랑스는 동부 국경지대와 중부 산악지대를 제외하고 농토로 이루어져 있다. 해양성 온대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대하천이 흐르고 있어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농업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의 국토면적은 544,000 km²로 영국의 2.5배, 이탈리아의 1.8배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 최대의 농업국가임.¹²⁾

(2)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

1) 프랑스 농업법전에 따른 농업 및 농업인의 정의¹³⁾

- 프랑스의 농수산업법전(Code rural et de la peche maritime)은 개별적인 농업 및 수산업 관련 법령을 하나의 법전으로 편제한 것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의규정을 두어 농업이나 농업인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있고 각 개별 조문에서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농업(activite agricole)은 제3편 농업(exploitation agricole)의 일반규정(총칙)에서 "동물 또는 식물의 생태적 주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농수산업법전 제L.311-1조), 농업인(l'agriculteur)은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개별 조문에서 농업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농업인은 첫째, 영농활동을 위하여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투여할 것, 둘째, 총 소득의

12) 최근 유럽 연합 통계 조사 기관인 유로스탯이 발간한 유럽 통계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4년에 유럽연합의 농업 생산 가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로 나타남. 프랑스의 유럽연합 내 농업 생산 가치는 EU전체 농업 생산 가치의 18%를 차지했고, 독일 14%, 이탈리아 13%, 스페인 10%, 영국 8%, 네덜란드 7%, 폴란드 5% 순으로 나타남.

http://www.eknews.net/xe/?_filter=search&mid=France&search_keyword=%EB%86%8D%EC%97%85&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475045

13) 김현희, 농업인·농산물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6. 55-56면.

50%를 농장에 기반을 두고, 농림업 생산활동 또는 농촌관광 기타 농림업에서 연계된 활동으로 얻은 수입일 것, 셋째, 농업인건강보험(AMEXA)에 가입되었을 것, 넷째, 농장의 총소득 중 25% 이상을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할 것 과 같이 개별 조문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특정 요건을 규정함.(제R.343-5조).

2)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¹⁴⁾

○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한 나라이며 농업법인은 ‘농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특수법인 형태로 도입되었음.

① 민법상 영농조합(SCEA : Société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

○ 민법상 영농조합은 일반 민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프랑스 민법전 제 1832조 내지 제187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 민법상 영농조합은 일반 민사조합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설립 목적은 농업 생산 또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SCEA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나 구성원에 관한 법적 제한은 없음.
- 공동농업경영단(GAEC) 또는 유합농업경영회사(EARL)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는 구성원(조합원)이 될 수 없음. 공동농업경영단(GAEC)은 본인과 배우자만을 구성원으로 할 수 없는 데 반하여 SCEA는 부부만을 구성원으로 조직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 SCEA의 형태로 법인을 조직한다.

② 공동농업경영단(GAEC)

○ 공동농업경영단(GAEC : Groupement d'exploitations agricoles en commun)은 기본적으로 가족농이 확장된 법인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노동과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전문화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도화된 것.

14) 이 절의 내용은 ‘SCEA’ 제도를 제외하고, 환경농업연구원(김정호/정영환/최은아), 농어법인조사 개선 방안, 2015.11.에서 인용.

- 농자재의 공동 구매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영농후계자의 영농 정착을 용이하게 하고, 공동 농작업을 통해 휴가를 가거나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조직된 것임.
- GAEC는 가족농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력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 즉 GAEC의 구성원은 최대 10인 이하이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공동으로 농업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또한 본인과 배우자 만으로는 GAEC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농업경영단에 대한 출자는 현물출자, 현금출자, 노동출자가 가능하고 임금노동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음.
 -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 또는 임차한 농지를 공동농업경영단이 이용하게 하고 토지임차인이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와 맺은 토지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동농업경영단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은 공동농업경영단 가입 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③ 유합농업경영회사(EARL)

- 유합농업경영회사(EARL: Exploitation Agrico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는 비농업인의 자본 참여를 허용한 법인이며, 농업인의 경영 자산과 개인 자산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에 도입된 형태. 실질적으로는 GAEC가 축소되고 구성원이 줄어들면서 법인 형태를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 유합농업경영회사(EARL)의 구성원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최소한 1인은 농업경영인이어야 하고, 농업인이 다수이어야 함. 참여자 수는 1~10인이고, 경영주와 배우자가 EARL을 구성할 수 있음.

- 경영면적은 최대 10SMI(최소 영농정착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최소 7,500 유로이고,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가 가능하고, 현물 출자 중 부동산은 회사 자본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만이 출자할 수 있음.
- 유합농업경영회사(EARL)의 법적 성격은 민사회사법의 회사와 동일한데,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보유 지분에 비례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참여 지분의 한도 내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금융 거래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④ 농업경영민사회사(SCEA)¹⁵⁾

- 농업경영민사회사(SCEA: société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공동조직이며, 농업법인 가운데 제약조건이 가장 완화된 형태로서 경영방식과 수익분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법인의 구성에는 최소 2인 이상이 요구되나 부부간에도 구성이 가능하고 법인과 비농업인도 참여 가능함.
 - SCEA는 자본에 최소 출자액이 요구되지 않고, 영농 면적에도 상한과 하한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 설립에도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전형적인 민사회사로서 구성원의 책임은 출자 비율에 따른 무한책임임.
- SCEA는 농업경영체로서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저리융자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SCEA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제 및 사회보장혜택도 소멸됨.

15) 농업법인조사 개선방안, 46면.

< 표- 13 > 영농법인제도 비교표¹⁶⁾

구분	민사영농조합 (SCEA)	공동농업경영단 (GAEC)	유한농업경영회사 (EARL)	공동조합 (SEP)
설립형태	민법상 조합	민법상조합	민법상 조합	(해당없음)
회사 자본	최소자본 규정 없음	최소 1,500 유로	최소 7,500 유로	공동자본 없음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인, 최대제한 없음 • 본인과 배우자 만으로는 구성 가능 • 비농업인도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 법인도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인, 최대 10인 • 비법인, 성년자 • 농업경영인 • 본인과 배우자 만으로는 구성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인, 최대 10인 • 비법인, 성년자 • 비농업인도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하나, 전체 출자금의 50% 이하 한도 내 가능 • 본인과 배우자 만으로 구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인, 최대제한 없음
책임한도		출자자본의 2배 한도	출자자본 이내	
허가 요부	불요	위원회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가 허가	불요	불요
등록	등록필요	등록 필요	등록필요	등록을 권고함
공시	BODACC에 공고	BODACC에 공고	BODACC에 공고	공고 없음
상업 등기부	등기함	등기함	등기함	등기하지 않는 경우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음.
상한 면적		제한 없음. 단 공동경작지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됨	10 SMI (최소영농 정착면적)	
법적 투명성		• 구성원은 농업 경영주의 자격	제한 없음	

16) http://www.chambres-agriculture.fr/fileadmin/user_upload/National/002_inst-site-chambres/pages/exploitation_agri/Tableau_Societes_exploitation_08012016.pdf

구분	민사영농조합 (SCEA)	공동농업경영단 (GAEC)	유한농업경영회사 (EARL)	공동조합 (SEP)
		을 보유 • 정책자금 지원 시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수혜를 받음		
농업노동 참여여부	의무가 아님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임	자본의 50%이상을 출자한 구성원에게 의무임	특별한 규정 없음
의결권	출자지분에 비례	1인 1표	출자지분에 비례	특별한 규정 없음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농업기본법에 근거 • 참여농민은 GAEC의 경영과 농업작업에 동시에 참여해야 함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GAEC는 경영체 상속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용됨 • 법인은 참여할 수 없음 • 대부분 한 가족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구성되는 경우는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됨 • 최소한 구성원 가운데 1인은 농업경영인이어야 함. • 부모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설립한 GAEC에서 경영주의 은퇴 후에 후계자가 유연하게 경영을 승계할 수 있으며, 1인만으로도 GAEC를 설립할 수 있음. 	

3) 프랑스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요건

- 농지 소유에 관한 프랑스내의 논쟁을 보면¹⁷⁾ 프랑스 대혁명 이후, 농지법과 관련한 논쟁이 있어 왔음. 농지법의 근본 취지는 농민에게 농지를 균등히 분배하자는 토지개혁안으로 시민 국가의 농민은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를 소유해야 했는데,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농민의 수는 많아 농민이 소유할 토지는 필연적으로 소규모일 수밖에 없어 혁명 이념은 모든 시민이 소토지 생산자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음.
- 프랑스에서 농지소유와 관련된 규정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의 농지법의 규정 같은 자경을 하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프랑스 Safer라는 기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¹⁸⁾, Safer는 농지 시장을 규제하고 농업인 보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이 농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가지고 사법상 선매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다양한 조직적 기능적 주체들을 두고 있으므로, 농지소유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프랑스 농업법에서도 농지는 단순히 소유의 객체일 뿐 아니라, 개발의 대상이며 동법은 이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근 프랑스 토지등기사무국(Safer)에 따르면 프랑스의 토지 독과점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프랑스 농업모델은 점점 월급농민들로 전환되고 있으며 대주주 농장 개발과 거대 기업에 의한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⁹⁾

17) 노명식,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1871, 책과함께, 2011,

18) SAFER는 「1960-1962년 농업기본법」에 의해 창립되었는데, 농촌의 농업직능대표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농촌자산(농지)의 매매를 담당하는 특수부동산 회사이다. SAFER는 「농촌법전」L.111-2에 따라 농촌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의 재분배와 재정리를 목적으로 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지와 산지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석수, 프랑스 농업제도 조사, 2008.12, 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결과보고서, 7-8면.

19) http://www.eknews.net/xe/?_filter=search&mid=France&search_keyword=%EB%86%8D%EC%97%85&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492580

- 1995년에서 2015년 동안 농지 법인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배, 면적 2.5배, 가격 2.5배로 증가했으며 2015년 기업들의 농지거래는 10%에 이르렀으며 이는 총 매매면적의13% 그리고 총 매매액의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Safer의 검열과 법을 회피하기 위해 농산품관리 비영리민간단체연합이나 주식회사의 급속한 증가현상이 나타나 이러한 기업들은 프랑스 토지 270만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10.6%가 증가하면서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포도밭을 비롯해 대규모의 토지가 이미 외국 거대자본의 소유가 된 지 오래되었고 나머지 농지들 또한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음.
 -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옹포(France info)에 따르면 농지가 투자의 대상이 되어 가면서 프랑스 농업계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되었던 농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음.
- 프랑스 농지에 관한 투기과열 문제로 프랑스 농지가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면서 농민들의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가 소수의 특정기업의 농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 중에 있음.
- 투자자들의 프랑스 유명 포도재배지 매입 규모는 방대하며 이러한 현상은 국경,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곡물농지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들뿐 아니라 프랑스 기업들에 의해 중부와 노르망디 지역의 대규모 토지매입도 확산되고 있음.
 - 자본에 의한 토지 매점이 확대되면서 농지에서 내몰리는 농업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토지 독과점을 막고 토지오염을 억제시키기 위한 생물적 방제가 주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번 법안은 Safer에 지분 100%미만이라도 모든 농지취득신고를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Safer의 농지 선매매제를 도입해 젊은 농민들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4) 프랑스 농업법인 세제지원 정책**
- 프랑스는 다른 EU 국가와 동일하게 농업법인 등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금이나 세제지원을 규정한 법률이나 공식적인 정책은 없음.

- 특히 2009년 유럽의회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프랑스의 과일, 야채 생산자들에게 지급된 농업보조금 3억 3천만 유로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5억 유로에 대한 환급을 프랑스에 통보했던 전례가 있어서²⁰⁾ 농업법인 등에 대한 공개적인 세재지원 정책이나 제도를 찾기 어려움.

(3) 프랑스의 농업협동조합법제

1) 개 요

- 프랑스의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에 관한 법률과 명령을 집약한 농업법전 (code rural)중의 제5편의 「농업직업조직」 중 제2장에 규정되어 있음.
- 제5편 농업직업조직(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농업회의소(Chambers d' agriculture), 제2장 농업협동조합(Sociétés coopératives agricoles, 이하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이라 약칭한다), 제3장 농업공동이용조합(Société d' intérêt collectif agricole), 제4장 농업이익혼합회사(Société mixed d' intérêt agricole), 제5장 농업생산자집단(Groupements de producteurs et comités économiques agricoles), 제6장 가족농원조직(Jardins familiaux) 등의 규정.²¹⁾

2)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 농업협동조합의 사업내용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자체는 농업생산자가 그 이익의 공동수호를 증진하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규정 밖에 없고, 구체적 사업내용에 관하여는 행정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20) http://www.eknews.net/xe/?_filter=search&mid=France&search_keyword=%EB%86%8D%EC%97%85&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80121

21) 농업법전은 '법전'의 형식으로 편제된 것으로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Loi)과 행정부가 발령한 행정명령(décret)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일 장과 절에 법률의 각 조와 행정명령의 각 조가 상관성을 가지도록 편제되어 있다. 법률은 제L__조, 행정명령은 제R__조로 표시한다.

-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과 비교해서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행하지 않고 경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영조합이며, 그 구체적 사업내용은 구매, 판매, 가공, 이용, 상담 기타 서비스 제공사업 외에 조합원 중 임업인이 있는 경우 임업 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농업협동조합이 스스로 농업생산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나의 사업 또는 둘 이상의 복수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가 있음. (행정명령 R521-1조).
- 다만, 이용사업과 가공사업에 관하여는 농업법전상의 농업공동이용조합과 농업이익혼합회사가 농업협동조합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직은 아니지만 양자는 사업목적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이 갖는 협동조합성을 완화한 형식을 취함.

3)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법은 앞에서 기술한 협동조합공통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이 때문에 앞의 장에서 설명한 협동조합공통법과 내용이 다른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이 공통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
-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이 그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 활동의 성과를 개선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모든 방법에 의해서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L521-1조)고 규정하고 있다.²²⁾
- 제L521-3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을 다른 사단과 구별하는 요건을 정하고 그 정관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만 농업협동조합(연

22)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Article L521-1. "Les sociétés coopératives agricoles ont pour objet l'utilisation en commun par des agriculteurs de tous moyens propres à faciliter ou à développer leur activité économique, à améliorer ou à accroître les résultats de cette activité.

Les sociétés coopératives agricoles et leurs unions forment une catégorie spéciale de sociétés, distinctes des sociétés civiles et des sociétés commerciales. Elles ont la personnalité morale et la pleine capacité.

Les sociétés coopératives agricoles peuvent se grouper en unions de coopératives agricoles. Sauf stipulation expresse contraire, ces unions sont soumises aux mêmes dispositions que les sociétés coopératives agricoles.

합회를 포함)의 자격과 명칭을 인정한다. 그 조건으로서는 ① 조합원이 조합을 이용하고 그 이용도에 따라 출자를 할 책임을 부담할 것, ② 출자를 한 조합원만이 업무를 행할 것, ③ 출자에 대하여는 일정률 이하(공통법의 규정과 동일 이율)의 이자만을 지급할 것, ④ 가치분 잉여금은 이용 배당으로 할 것, ⑤ 출자금은 명목가치로 환급할 것, 청산 시 조합 순자산은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익에 귀속시킬 것, ⑥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평등하게 할 것의 6가지 조건을 두고 있음.(제L521-3조 제1항 a-f)).

- 농업협동조합의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았지만, 요컨대 프랑스의 농업협동조합이 매우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개념에 따라서 협동조합법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도, 일정 조건하에 일부원칙을 완화하여 원칙의 탄력적인 운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조합원제도의 다양화 경향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만으로 구성되는 단체라는 종래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주변의 관계자와의 협력관계를 도모하려는 혼합적인 사업체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4)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은 농업경영주인 조합원 7인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다만, 농업용자재의 공동이용과 축산물의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4인 이상, 연합회는 임의의 수로 할 수 있음(제R522-1조).
- 설립행위로서는 설립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총회를 거쳐서 임원을 선출하고, 가입자가 인수한 출자의 납입을 완료한 후에 법원에 설립신고를 하는 동시에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농협과 유사함.
 - 농업협동조합법은 그 시행령에서 등기신청절차 등기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제R521-7조 내지 제R521-15조), 농업협동조합이 등기부는 법원의 「상업 및 사단등기부」에 등기되어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에서 청산까지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

- 농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행정청의 인가의 문제로 농업협동조합과 그 연합회의 설립은 행정청의 인가를 요하며, 설립요건에 위배된다든가, 법령 및 규칙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가가 거부됨(제L525-1조).
 - 인가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하지만 주된 불인가 사유로서는 주무장관이 별도로 정한 모범정관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제R525-8조), 또한 행정청의 설립인가 이후에 생긴 사유로도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정관 법령에 위반한 때, 이사의 능력의 결여, 그룹의 이익을 무시 하는 경우 등임(제L525-1조).
 - 인가는 농업장관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각 현단위의 공화국정무위원을 통하여 현 농업구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가를 하고(제R525-2조), 현을 넘는 업무구역의 조합과 연합회의 인가는 전국단위의 중앙위원회가 행하며, 이 위원회는 농업장관을 장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제도 최고평의회 중의 하나임(제R525-2조).
 - 인가는 조합 설립총회의 1개월 전에 발기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 제절차가 완료된 후에 인가를 부여함.(제R525-1조, 제R525-8조).

- 프랑스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이나 1개의 업무구역 내에 동일목적의 복수조합이 설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그 최종결정권은 행정청이 가지고 있음.
 - 독일과 비교하면 프랑스에서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의 관여의 폭이 질적·양적 모두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행정에서 농업협동조합제도의 최종적인 질서 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중앙집권국가다운 현상이고, 농업협동조합도 크든 작든 공익적 정책적 성격의 조직으로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함.

(4) 프랑스의 협동조합법제²³⁾

1) 프랑스의 협동조합제도

- 프랑스의 협동조합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생산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각 분야에 걸쳐있고 노동자, 수공업자, 소매상, 주택, 서비스업의 전 분야에 폭넓게 존재함. 그 중에서 농업분야의 협동조합은 경제사업 전문의 농업협동조합(coopération agricole), 신용사업전문의 농업상호신용조합(crédit agricole) 및 공제전문 농업상호공제조합(mutualité agricole)의 3부문에서 제각기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근거 법률

- 프랑스에는 모든 협동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협동조합 정관을 위한 법」(이하 협동조합공통법(loi portant de la coopération) 또는 공통법이라 약칭)이 존재함.
- 프랑스의 협동조합 관련법(coopération agricole)은 협동조합법에 상사회사법이 원용된다든지, 은행법이 적용되는 등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원용되는 경우가 많음. 즉,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법제가 협동조합을 일반기업과는 차별화된 특수한 분야의 조직으로 파악하여 온데 대하여, 프랑스의 협동조합 법제는 민법적 조합에서 가변자본회사, 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인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있어서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는 형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전체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일반 법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내용

- 우리나라 종합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비교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차이가 있음.

23) 프랑스법제에 관한 내용은 김두년. "프랑스 협동조합법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24.2 (2006): 1-49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임.

- 첫째, coopération agricole 과 crédit agricole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 프랑스의 농업협동조합은 모두 전문농협이며 작목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있기 때문에 작목의 지리적 분포에 따라서 그 지역과 분포상황이 다르고, 조직형태도 전국적인3단계 조직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지역만에 분포하고 조직도 2단계 또는 1단계 조직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음.
- 농업상호신용조합은 지금도 명칭에는 crédit agricole이라고 「농업」이 남아 있지만 그 이용대상에는 제한이 없고, 이 농업상호신용조합도 처음에는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농업신용을 공여하는 농업신용기관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이면 누구라도 가입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인금융이자 지역금융기관으로 변화했음.

4) 프랑스의 협동조합법

- 1867년의 사단법(Loi sur société)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법 형식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협동조합은 합자회사(sociétés en nom collectif), 유한회사(s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주식회사(sociétés anonymes) 또는 주식합자회사(sociétés en commandite par actions)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1947년의 「협동조합의 정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법의 제정에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한 고유하고 독립적인 법 형태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이 법은 협동조합의 법제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프랑스법상 상사회사나 민사회사나 모두 법인격을 갖는 것은 명확하고, 협동조합은, 민법상의 조합(프랑스 민법 제1832조)이 아니라 일반회사와 같은 사단적 의미를 갖는 조합(société)임.
- 프랑스에서는 모든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협동조합공통법이 있고, 종류별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병존하는 법 형식을 취하고 있음.
- 1992년 9월 10일 법 제47-1775호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14)에서는 협동조합 관련 법률의 전반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제1편(제1조 내지 제19조)에서는 협동조합공통법의 개정, 제2편(제20조)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법의 개정, 제3편(제21조, 제22조)에서는 소매상협동조합법의 개정,

제4편(제23조 내지 32조)에서는 생산자협동조합법의 개정, 제5편(제33조 내지 제47조)에서는 일부 경제활동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수공업협동조합, 해상인협동조합, 해상이익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6편(제48조 내지 제53조)에서는 건설주택법의 개정에 의한 서민주택협동조합 관련 규정의 개정, 제7편(제54조, 제63조)에서는 협동조합 은행 관련규정의 개정, 제8편(제64조 내지 제67조)에서는 「농업법전」의 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집단이익회사 관련규정의 개정, 제9편(제68조 내지 제71조)에서는 징세관련규정의 개정 등,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 대한 일거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음.

5) 협동조합의 조직

- 법적으로 독립한 사단에서는 대체로 그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활동을 담당하는 집행기관, 그리고 집행기관의 운영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필요하고 총회에서는 다른 2기관의 임원을 임면하는 것이 일반적임.

(5) 소결 및 시사점

-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한 나라이며 농업법인은 ‘농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특수법인 형태로 도입하였음. 다만, 농업법인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경영체지원법과 같이 법적 정의규정을 두거나 농업이나 농업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의하지 않고 각 개별 조문에서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농업법인 형태를 보면 민법상 영농조합(SCEA), 공동농업경영단(GAEC), 유합농업경영회사(EARL), 농업경영민사회사(SCEA) 등이 존재하고, 각각의 설립형태와 절차, 구성원 등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모든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협동조합공통법’이 있고, 종류별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병존하는 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농업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간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란은 없음.

- 프랑스 농업법인에 대한 토지소유요건의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농지법이나 농어업경영체지원법과 같이 농지의 소유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고, 시장의 상황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최근 소수 기업의 농지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등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EU 통합으로 인하여 프랑스 법률에서 독자적인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정책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제 4 절 농업법인 제도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 농업법인의 설립, 운영, 관리의 방향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농업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
 - 농업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서 살펴본 농업분야 조직체 중 협동조합과 농업법인 관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중 유한책임회사 도입 여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
 - 농업법인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 농업법인의 관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농업법인의 관리 문제점을 짚어보고 관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

1. 농업법인 설립 관련, 법령 체계정비방안 제시

(1)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과 농업법인과 관계설정

① 문제제기

- 농업분야 조직체 중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분야 협동조합이 1,000여개를 넘어섰으며 농업법인과 유사업종을 영위함에 따라 농업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관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의 경우, 기존의 농업법인은 ① 농지 소유 및 이용이 가능하고, ②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③ 기타 정부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지원과 혜택을 받기위한 논의로 판단됨.

② 농업분야 협동조합 현황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동법에 의해 설립한 농업협동조합이 1,000여개를 넘어섰고,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경우 도소매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 제조업 부문 등의 협동조합들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농림어업

부문의 협동조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22.6%)이 가장 많고, 교육서비스업(16.1%), 농림어업(11.5%), 제조업(1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4%) 등의 순으로 나타남.²⁴⁾
 - 사업 내용상 농업 생산 외에도 부가적으로 음식점업, 숙박업, 수공업, 식품가공업 등의 활동을 겸하지만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협업적 농업 경영을 수행하고 있음.
 - 이처럼 업태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데도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농촌 지역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이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⁵⁾
-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를 보면 ① 원래 비영리사단법인을 배경으로 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한 경우,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요건이 농업인으로 제한적이지만,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소비자 등 농업인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여러 이해당사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③ 협동조합의 가치와 운영 원리를 선호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설립한 경우, ④ 정부 등의 협동조합기본법 홍보 및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음.²⁶⁾
- 영농조합법인은 의사결정원칙 등 많은 부분이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민법상의 조합’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농조합법인의 공동자산에 관한 소유권 형태가 합유(合有)에 해당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유한책임 회사이며 공동자산의 소유권 형태가 공유(共有)와 유사하다는 것도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을 두고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이유로 보고 있음.²⁷⁾

24) 이철선 외 5인,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 5면.

25) 이와 관련한 연구로 김기태외 4인,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2013)가 있으나 조사대상풀이 협소하여(조사대상자 14명) 타당성이 있는 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26) 김정섭·김미복,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23면.

27) 김정섭·김미복, 위 보고서 22면.

③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형평성 검토

○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들이 다수 있으나 크게 ①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것, ② 조세감면 혜택에 관한 것, ③ 기타 지원정책이나 규제에 관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현재의 법률체제에서는 농업인들이 협업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
- 농지법에 의하면 따르면(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 농지법에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정의된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함.(동법 제2조 제4호)
-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에 관한 여러 종류의 법제나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됨.
- 예컨대, ①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의 일괄적 상속·증여 또는 양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농지법」제22조 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②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도록 청구(「농지법」제33조의 제2항)할 수도 없고, ③ 농지법 제15조에서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농지법 외에도 농지 소유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농업법인에게 제공되는 자격이 있는데, 역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함.²⁸⁾

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는 농지매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농업법인은 이 사업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되고 있다.

○ 둘째, 조세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

-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된 조세감면제도는 약 30개 이상에 이르고,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은 ①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과 관련하여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소득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²⁹⁾ 또한 ② 제69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으로 일정 요건을

2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

갖춘 이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제71조에서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직접 경작에 종사하는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두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농업법인에 대한 유사한 세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① 농협 등이 농업법인에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동법 제10조), ② 농업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법인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동법 제11조), 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농업법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 및 임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동법 제13조), ④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일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동법 제126조), 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동법 제128조), 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업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동법 제129조) 등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기타 지원정책이나 규제에 관한 사항

-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음. 그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2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58조, 제59조 등에 지원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 지원 정책 관련 조항은 다른 농업 관련 법률, 시행령,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주요한 법적 근거로 인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 ①법 제28조에서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9조에서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이나 농어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여러 지원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또한 농업법인 자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③ 법 제42조에서 농수산물과 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 ④ 법 제43조에서 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농업 부문의 해외 투자, ⑤ 법 제58조에 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을 규정하여 농수산물 식품 수출 진흥에 필요한 정책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

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어업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농수산물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농업인 등’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5조에서도 농어업경영법상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고(제3조),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게 하고(제8조), 여러 종류의 인가 및 허가 관련 의제를 허용하고 있으며(제11조), 공공기관이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외소득 활동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촉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제15조)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있어서도 농업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음.

<표- 14> 기존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농민임에도 공동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도 없다는 점,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소유를 위해 영농조합법인(협업적 농업경영체)을 별도로 설립해야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농업협동조합이 농지를 살 수 없어서 별도의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경우 소유권 문제로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됨. ○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으로 조합원이 구성되고 동일한 사업을 수행해도 농어업경영체지원법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한 자들이 농지를 구매하였으나 등기하지 못해 다시 매도하거나 매수를 문제들이 발생함. 이외에도 농업관련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조세특례를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평등 문제도 발생. ○ 논란이 되는 대기업 농업 진출은 지난 정부에서 농어업경영체지원법에 비농업인이 총 출자액의 90%까지 지분을 가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발생한 문제로 비농업 자본에는 규제를 풀고 농업협동조합을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

- 하지만 앞서 살펴본 농업법인과 협동조합 사이의 지원 형평성에 대해서 ‘농업분야 협동조합’과 다른 법인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법인 관련 법률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있음.³⁰⁾
-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도 조세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조세혜택이 없으나³¹⁾,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조세 이외의 부과금 면제,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비영리법인상 혜택 등 조세특례제한법 등 적용되는 조항이 있음. 또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관련하여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책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

30) 김정섭, 협동조합기본법시행과 농업법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제21권 제1호, 2014, 4면.

31) 조세제한특례법 제72조에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결

- 기존에 농촌지역에서 농업법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협업적 영농을 해오던 단체들이 설립이 용이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업적 영농을 해오고 있는 상황과 농업법인과 유사성과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 종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농업분야 협동조합 정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농어업경영체법이 규정하는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포함시키는 방안, 농업생산자단체로 지정하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사업 지침을 정비하는 방안, 농업협동조합법을 정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기존의 농협들과 경합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협력하도록 촉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음.³²⁾
- 문제는 ‘농업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지원법 하나만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지원법 이외에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법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32) 김기태 외 4인,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2,

(2)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농업법인 인정시 법적 정합성 검토

① 문제제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협동조합기본법 등 타 법률과 농어업경영체법간의 정합성 문제와 관련된 추가조항의 개정이 농어업경영체법 다른 규정과의 충돌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법률해석상 정합성 및 체계성이 문제될 사항

- 첫째, 입법목적과 취지의 상이함.
 - 농어업경영체법은 입법 목적이 농어업경영체의 육성을 통한 농어촌사회의 안정에 있어 대상법률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확함.
 - 이에 반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취지하에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기원이 유사하나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제도화된 결과물로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협업’이라는 개념 없이 출발한 농업회사법인은 그 둘과는 성격이 매우 다름.

<표- 15>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비교

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기본법
제1 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 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사업의 운영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영농을 직접적·전면적으로 요구하고,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조합의 업무중 일부로 협업적 영농을 영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부 유사성이 인정됨.
 - 따라서 현실적 운영상황을 감안하되 양 법률의 연혁과 기능 또한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농업법인 인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농업법인 설립 요건의 상이함.
- 영농조합법인은 원칙상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도 준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면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제한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예상됨.

<표- 16>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 비교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p>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p>

- 셋째, 사업범위와 관리감독의 상이함
- 사업범위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은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산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범위(금융 및 보험분야 제외)를 사업범위로 인정한 협동조합기본법과 충돌이 예상됨.

<표- 17>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의 사업범위 및 규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p>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u>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u></p> <p>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동법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p>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u>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u></p> <p>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동법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p>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p> <p>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p>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p> <p>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p>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p>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p> <p>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p> <p>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p>사업</p> <p>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및 비축사업</p>	
<p>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p>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4.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의 설립요건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 규정 없음. * 다만, 제49조(운영의 공개), 제49조의2(경영공시)를 통해 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시를 함. * 그 외에 관련 부처(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규정은 없음.

③ 소 결

- 이미 현실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농업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으로 인정해야할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지만농어업 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조세혜택과 정부지원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입법 목적과 사회적 기능, 제도의 연혁이 다른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적 개정에서 있어서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정비된 법적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농업분야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사업범위와 이에 대한 실태조사, 운영에 대한 관리를 기존의 농업법인에 따르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임.

(3)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농업법인 인정과 관련, 개선방향 제시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농업법인 인정여부가 법적 논란이 되고 있어서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다른 규정과의 법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논의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선방안에 대한 장점 및 법적 논거와 단점 등을 분석하여 제시함

1) 제1안 - 현행 농어업경영체법 유지 방안

- 장점 및 논거

① 법리적 논거

- 농업법인의 인정기준 및 범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어업경영체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므로 농업분야 협동조합을 농어업 경영체법상의 농업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상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농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 형식의 농업법인을 신설하거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업분야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규정이나 조직변경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법적용 현실의 논거 : 농업법인 관리감독상의 문제

-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서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②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제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제20조의 2(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설립요건 위반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림. 또한 제20조의3(해산명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
- 제2안처럼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인정할 경우 이러한 농어업경영체법상의 관리감독규정 적용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발생함.
-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설립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므로 설립근거가 다른 농어업경영체법상의 관리감독규정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함.

○ 단점 및 입법상의 문제점

- 현행 농업법인제도를 유지하자는 안은 협동조합 중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을 유지하려는 경우 관련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함.
-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이 아닌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업분야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규정이나 조직변경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간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2) 제2안-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방안

①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 이외에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의 하나로 신설하는 방안

○ 장점 및 입법적 논거

-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농어업경영체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므로 농업분야 협동조합을 농어업경영체법상의 농업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나 이미 농촌 지역에서 농업법인이 아닌 협업적 영농조직이 존재하는 현실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업적 협동조합이 급속하게 조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 이외의 협업적 농업법인을 직접 신설하는 방안임.

○ 단점 및 입법상의 문제점

-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협업적 영농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업적 농업법인을 신설할 경우 ‘법적 필요성’과 신설되는 ‘농업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별성이 요구되나 조합 구성원이나 현실적인 사업범위를 고려할 때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움.
- 신설되는 협업적 농업법인의 명칭에 있어서도 그 선택이 어려움.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협동조합의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②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 장점 및 법리적 논거

- 제 2안의 논거와 동일함. 이미 농촌 지역에서 존재하는 협업적 영농조직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업적 영농 조합이 급속하게 조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분야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임.
- 다만, 농어업경영체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상의 차이가 있어 간주요건을 규정하고, 적용이 필요한 농어업경영체법상의 준용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단점 및 입법상의 문제점

-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분야 협동조합을 일정한 요건하에 농업법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영농조합법인과 설립요건이 달라 협동조합을 관리감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설립요건 위반시 이를 농어업경영체법상의 규정에 따라 제재하기도 불가능함. 예컨대, 농업법인의 해산사유와 협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상이함.

<표- 18> 농어업경영체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관리감독규정 비교표

	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기본법
사업의 범위	<p>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 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p>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p> <p>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p>
경영공시규정	규정 없음.	<p>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기본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 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 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 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 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 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 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농어업)경 영정보등록	제 4 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 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 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 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 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생략	규정 없음

	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기본법
	<p>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 6 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실태조사</p>	<p>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p>	<p>규정 없음.</p>

	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기본법
	<p>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p>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기본법
	<p>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관리감독 규정</p>	<p>-실태조사 후 시정명령</p> <p>-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4.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 	<p>규정 없음</p>

	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기본법
	<p>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p>6.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p>	
해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직변경에 의한 해산 -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 시장·군수·구청장의 법원에 해산을 청구에 의한 해산 	<p>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p>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벌칙규정	<p>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p>제119조(과태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기본법
	<p>는 어업법인</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p>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3) 소결

- 농업법인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상의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농업법인 인정여부에 대한 적합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이나 농업분야 협동조합 등 농촌지역의 농업경영체가 협업적 농업경영을 하거나 기업적 농업경영을 할 경우, 국가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명칭여부에 관계 없이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하게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위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협동조합기본법상에 전환규정을 두는 제1안과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협업적 영농조합을 신설하거나 협동조합을 농업

- 법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제2안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문제가 있음.
- 제1안은 농어업경영체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법적용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거나,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의 다른 법률상의 법인으로서의 조직변경 금지규정을 두고 있어서 입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제2안은 농어업경영체법상 이미 존재하는 영농조합법인 이외에 협업적 영농을 수행하는 새로운 농업법인을 신설하는 법적 필요성의 부재와 농업법인 간주규정을 두는 경우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 타당하지 않음.
- 논의 가능한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법적 원칙과 규정 필요성, 현실적 문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만을 협업적 및 기업적 농업경영의 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농업분야 협동조합과 관련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논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과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
-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도(동법 제39조),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부과되는 의무인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의 대상(동법 제40조), 농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 지원의 대상(동법 제42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공동브랜드화 정책의 대상으로(동법 제43조) 기존의 농업법인과 함께 농업법인으로 포함된 농업분야 협동조합 법인도 고려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다른 관련 법률에서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다른 법률에서는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의 경우 개별 법률들에서 ‘농업 관련 단체’를 제 각기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을 그 ‘농업 관련 단체’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면 개별 법률 수준에서의 정의 조항을 살펴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함.

(4) 농업회사법인의 설립형태 검토

① 문제제기

-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은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
-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를 준용하는 법인이며 4가지 설립형태 또한 상법상의 회사형태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임
- 2012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새로운 회사형태가 도입되었음에도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는 도입되지 않아 검토 필요성이 논의됨

②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및 입법취지

-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로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함. 동업자조합 등의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 형태로 유한책임회사의 내부 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취지는 주식회사는 자본을 크게 형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유리한 회사형태로서, 지분비율대로 결정하므로 지배구조가 경직적이고 설립이 까다로워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주식회사의 단점을 완화하고 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활성화된 설립방식을 추가하게 된 회사임.

③ 상법상 다른 회사형태와의 차이

-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등 경직된 조직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어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의 설립·운영과 구성 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 넓게 인정하는 회사 형태임.

-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음
-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형태를 띠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보다 더 쉽게 설립되고 운영이 가능한 회사로 평가할 수 있음.(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45)

④ 소결

- 2012년 상법의 개정으로 동업자 조합 등의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 형태로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되었고, 그 도입 취지도 기존의 주식회사의 경직적인 지배구조와 까다로운 설립의 어려움 등 주식회사의 단점을 완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창업 등 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업법인 설립형태의 하나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법적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보임.

2. 농업법인 운영 관련, 법령 체계정비방안 제시

(1)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① 문제제기

- 농업법인 사업범위 및 운영형태는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법인이 수행 가능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그 외의 사업들은 제한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따르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반대되는 방식으로서, 포괄주의보다 규제가 많고 폐쇄적인 접근 방법임.
- 농업법인 허가 사업범위는 최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을 포함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되었음(농어업경영체법 개정, 2015.1.6.).

② 신규 사업범위의 확대 검토

○ 농촌 태양광 사업

-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농촌 지역의 태양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지역 주민이 용지제공 및 투자자로 참여해 태양광부지 임대수익과 투자에 따른 사업배당수익을 지급받아 농가의 농업외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임.
- 고령화된 농가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미 사업을 추진중이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농어업경영체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태양광 사업을 포함시킬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함.

③ 소 결

- 따라서 법적인 취지에서 농촌에서 현재 추진되는 농촌 태양광사업을 농업 법인의 사업범위로 당장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추진되는 태양광사업의 형태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농촌지역 주민 중 농업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참여 형식도 태양광 시설물이 들어설 용지제공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농업법인의 사업목적과도 괴리가 있음.

3. 농업법인 관리 관련, 법령 체계정비방안 제시

(1) 설립절차 검토

① 문제제기

- 농업법인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설립통지제(1999년) 폐지 이후 관리상 공백 발생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비정상적 운영 및 부실법인 증가

- 설립통지제가 2015년 부활하였으나, 이미 법인격이 생성된 이후에 지자체에 설립 내용을 통지하는 것으로, 사후적인 관리에 머물러 농업법인 관리에 한계가 존재

② 협동조합 설립과정과 비교

- 설립절차에 있어 농업법인은 등기소에 ‘설립 등기 → 주무관청(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하나 협동조합은 주무관청(광역단체장 또는 위임된 경우 기초 단체 장)에 설립신고→ 확인증을 받은 후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됨.

<표- 19>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비교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협동조합 설립절차
<p>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p> <p>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u>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u>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협동조합 설립절차
<p>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p> <p>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u>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u> 통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 9 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 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p>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립총회 의사록</u>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p>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 5 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p> <p>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협동조합 설립절차
<p>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생략</p> <p>시행규칙 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p>	<p>8. 발기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사본</p>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협동조합 설립절차
<p>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u>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u></p>	

③ 소 결

- 강학상 통지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행정청이 특정한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그 자체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임. 하지만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상의 통지는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로 강학상 통지가 아닌 ‘신고’에 해당함.
- 농업법인의 경우 먼저 설립등기를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설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과정이 없고, 사후적으로 통지받아 관리하는 형식을 취함.
-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전 사전에 설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주무관청이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여 성립과정에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농업법인이 등기부등본 상 목적외사업이 등기되었고,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청구 등 행정조치를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2015년에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단순히 설립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하는 것은 사후적인 조치에 머물게 됨.
- 농업법인의 법인격이 형성되기 이전, 법령 위반사항 등을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한번 검토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재량을 부여하고

설립과 관리창구를 일원화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느낄 수 있는 혼란을 경감해야 할 것

-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같이 주무관청(광역단체장 또는 위임된 경우 기초단체 장)에 설립신고 → 확인증을 받은 후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도록 설립절차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별 침

1. 협동조합기본법 법체계 분석

1) 목적

-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입법취지

- 첫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크게 확대되었음.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활동을 허용. 예를 들면, 기존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는 별개로 농업, 수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협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 둘째, 지역 주민이나 취약계층의 권익 복리 편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큼.
- 셋째, 농촌 현장에서 협동조합을 지향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별 협동조합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영체 또는 사회단체들이 협동조합으로서 법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음.

3) 협동조합의 개념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동법 제2조)
-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동법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
 -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일반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통상 ‘사회적 협동조합’과 구별하려는 목적에서 ‘일반 협동조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협동조합기본법」이 아닌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에서도 ‘협동조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용어상 혼란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가운데 농업인들이 중심으로 설립하고 ‘농업경영’을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규제되는 ‘농업협동조합’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의 특징 및 장점(주식회사와의 비교)
 - 첫째, 협동조합은 투자자(주주) 소유 기업이 아니라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소유 기업. 이러한 차이로 해서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
 -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 이런 점에서 조합 총회 혹은 대의원총회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행사.
 - 셋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에 따른 배당보다는 이용 배당을 우선시함. 출자배당도 없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에서 출자배당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출자배당의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용배당이런 없고, 출자배당은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배당을 하며, 출자배당의 제한이 없음.

4) 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협동조합의 사업분야가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여러 경제활동분야에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고,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님.
 - 2014년 1월24일 기준으로 설립 신고가 수리된 일반협동조합 3,453개 가운데 ‘농업, 어업 및 임업’ 분야 일반협동조합은 388개(11.2%)에 달하고 그 가운데 다수가 농업분야 협동조합임. 도소매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 제조업 부문 등의

협동조합들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농림어업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수리된 협동조합 신고 건수가 전체의 40%를 넘고, 그 외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지에서 협동조합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음.

5) 설립절차

- 5인 이상. 자연인, 법인 가능. 1인 출자한도 30%
- 주무관청(광역단체장 또는 위임된 경우 기초 단체 장)에 설립신고 → 신고 수리 후 확인증을 받아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설립 신고가 수리되는 것만으로 일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수리 이후 등기되어야 설립됨.

6) 경영 형태

-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등을 영위

7)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³³⁾
 -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신고를, 분할 후 설립신고,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3) 제56조(합병 및 분할) 제57조(해산), 제58조(청산인)

-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³⁴⁾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조직변경(주식회사 등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리법인 → 협동조합)³⁵⁾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능.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 총회의 결의로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 법인등은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

34)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 법인등은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조합법인)과의 관계

○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름.

- 농어업경영체법은 입법 목적이 농어업경영체의 육성을 통한 농어촌사회의 안정에 있어 대상법률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확함.
- 이에 반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취지하에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기원이 유사하나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제도화된 결과물로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협업’이라는 개념 없이 출발한 농업회사법인은 그 들과는 성격이 매우 다름.

○ 설립요건과 절차

- 설립요건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은 원칙상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출자한도 없음) 준조합원으로 의결권이 제한됨. 반면에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제한이 없어 농업인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조합원이면 되고 자연인, 법인도 가능함.
- 설립절차와 관련하여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창립 총회 개최’ 등의 설립절차는 유사하나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관할 시·도지사) 후 확인증을 받아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등기소에 설립 등기 후 주무관청(광역단체장 또는 위임된 경우 기초 단체 장)에 설립신고를 함.

○ 사업범위의 차이

-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조합원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한다는 설립 목적에 해당한다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등을 영위하는 사업 수행이 가능함.
- 농업법인과 같이 법령으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없음.
-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편의 도모라는 초기의 농업법인 설립 취지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생산), 농작업 대행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으로 확대되었음. 농업법인 허가 사업범위는 최근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을 포함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되었음(농어업경영체법 개정, 2015.1.6).

<표- 1>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의 구별

구분	농업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현황	*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이 1,667개에서 2016년 지역별 농업회사법인 수가 3,000여개로 증가		
근거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설립은 유사하나 요건과 절차 및 세제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규정을 따르며,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법을 준용.		*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법인
설립 목적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요건	* 5인 이상의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출자한도 없음), 준조합원으로 의결권이 제한. * 조합의 특성상 농업인 5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 탈퇴 인원이 생기면 1년 안에 충원하여야 함.(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	* 상법상 발기인 규정 적용(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주식회사 1인 이상) 되고, 주주들의 모집에 자유로움.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가 가능	* 농업인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조합원 * 자연인, 법인 가능 * 1인 출자한도 30%

구분	농업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창립 총회 개최 → 이사회 의 확정 및 출자금의 불입 → 설립 등기 → 주무관청(광역단체장 또는 위임된 경우 기초 단체 장)에 설립 통지	*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제178조, 제270조, 제289조, 제543조에 의거) → 창립 총회 개최(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이사회구성), 설립년도사업계획의 승인 등) → 이사회 개최(대표이사 선임 등) → 출자금의 불입 → 설립 등기 → 주무관청(관할 시·군·구)에 설립통지	*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창립 총회 개최 → 설립 신고(관할 시·도지사) → 확인증을 받은 후 등기소에 설립 등기 * 주무관청(광역단체장 또는 위임된 경우 기초 단체 장)에 설립신고 → 확인증을 받은 후 등기소에 설립 등기
책임범위	유한책임 (2015년7월부터)	유한책임	유한 책임
농지소유	가능	가능 (업무집행권자의 1/3이상이 농업인인 경우)	불가
의결권	1인 1표	1주당 1표	1인 1표
사업유형/ 경영 형태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		* 법 제93조 제1항 *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등을 영위
	*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을 공동 출하 가공하거나 수출을 진행할 때,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을 조성/운영할 경우, 또는 농업경영이나 관련 부대사업을 할 경우에 적합.	* 농업인이나 농산물 생산 단체로서 농업운업을 기업적으로 하려할 때,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할 경우. * 영농법인과 크게 차이	

구분	농업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p>* 농산물을 공동 출하하고 가공과 수출 등을 주 업무로 다루는 사업</p> <p>* 농업의 경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농업 시설물 등의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 생산된 농산물의 공동출하 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이상과 같은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영농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p>	<p>는 없으나, 농기계 및 기타 장비의 임대, 보관,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 농업과 관련된 자재 및 기구의 생산, 농산물의 가공 등을 통한 유통사업 등이 유리.</p> <p>* 농산물을 가공하는 일 등을 하기는 하지만,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만들어 내고 이를 공급하며, 사들여 비축하는 등의 사업을 주로 수행 하는 법인에 필요.</p>	
주식(지분) 양도	총회 승인	원칙적 자유 정관으로 제한 가능	총회 승인
탈퇴	<p>* 임의 탈퇴-</p> <p>* 비 임의 탈퇴-</p>	주식양도	<p>* 임의 탈퇴³⁶⁾</p> <p>* 비임의 탈퇴-</p> <p>* 양도 탈퇴</p>
특례	<p>【 지방세특례제한법 】</p> <p>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p> <p>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특례적용 없음</p> <p>협동조합은 농업법인에 비해 농지취득 불가, 세제상의 감면 및 정책상의 지원 등이 제한.</p>

구분	농업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p>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 농업소득에 있어서는 두 법인 모두 전액 면제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면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법인세를 면제받고 농업회사법인은 소득 발생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50% 감면. - 배당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두 법인 모두 혜택이 주어지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간에 일부 차이가 있고 품목별로 혜택이 다름. 		

36)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17.8.9.>
 4. 금지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일본 농지법 조문 해석

* 농지법 제2조 해석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で「農地」とは、耕作の目的に供される土地をいい、「採草放牧地」とは、農地以外の土地で、主として耕作又は養畜の事業のための採草又は家畜の放牧の目的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농지」는 경작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말하며, “채초 방목지(採草 放牧地)”는 농지 이외의 토지로 주로 경작 또는 양축사업(養畜事業)을 위한 채초 또는 가축의 방목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この法律で「世帯員等」とは、住居及び生計を一にする親族（次に掲げる事由により一時的に住居又は生計を異にしている親族を含む。）並びに当該親族の行う耕作又は養畜の事業に従事するその他の二親等内の親族をいう。

- 一 疾病又は負傷による療養
- 二 就学
- 三 公選による公職への就任
- 四 その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事由

② 이 법률에서 「세대원 등」이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일시적으로 주거 또는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친족을 포함한다) 및 해당 친족이 하는 경작 또는 양축사업에 종사하는 그 밖에 2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 1.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요양
- 2. 취학

3. 공선(公選)에 의한 공직 취임
4.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유

3 この法律で「農地所有適格法人」とは、農事組合法人、株式会社（公開会社（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二条第五号に規定する公開会社をいう。）でないものに限る。以下同じ。）又は持分会社（同法第五百七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持分会社をいう。以下同じ。）で、次に掲げる要件の全てを満たしているものをいう。

③ 이 법률에서 「농지소유적격법인」은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공개회사(회사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공개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것에 한한다. 이하에서는 동일하다) 또는 지분회사(동법 제57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분회사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동일하다)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一 その法人の主たる事業が農業（その行う農業に関連する事業であつて農畜産物を原料又は材料として使用する製造又は加工その他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農業と併せ行う林業及び農事組合法人にあつては農業と併せ行う農業協同組合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三十二号）第七十二条の十第一項第一号の事業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であること。

1. 그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일 것(농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제조 또는 가공,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 농업과 병행하는 임업 및 농사조합법인인 경우 농업과 병행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72조의10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본 항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二 その法人が、株式会社にあつては次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株主の有する議決権の合計が総株主の議決権の過半を、持分会社にあつては次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社員の数が社員の総数の過半を占めているものであること。

2. 그 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에 해당하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합계가 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지분회사인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원의 수가 사원의 총수의 과반을 차지할 것

イ その法人に農地若しくは採草放牧地について所有権若しくは使用収益権(地上権、永小作権、使用貸借による権利又は賃借権をいう。以下同じ。)を移転した個人(その法人の株主又は社員となる前にこれらの権利をその法人に移転した者のうち、その移転後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一定期間内に株主又は社員となり、引き続き株主又は社員となつている個人以外のものを除く。)又はその一般承継人(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

- 가. 그 법인에 농지 혹은 채초 방목지에 대하여 소유권 혹은 사용수익권(지상권, 영소작권,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동일하다)을 이전한 개인(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되기 전에 이들의 권리를 그 법인에 이전한 자 중에 그 이전 후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일정기간 내에 주주 또는 사원으로 계속 주주 또는 사원인 개인 이외의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일반승계인(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ロ その法人に農地又は採草放牧地について使用収益権に基づく使用及び収益をさせている個人

- 나. 그 법인에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사용 및 수익을 시키는 개인

ハ その法人に使用及び収益をさせるため農地又は採草放牧地について所有権の移転又は使用収益権の設定若しくは移転に関し第三条第一項の許可を申請している個人(当該申請に対する許可があり、近くその許可に係る農地又は

採草放牧地についてその法人に所有権を移転し、又は使用収益権を設定し、若しくは移転することが確実と認められる個人を含む。)

다. 그 법인에 사용 및 수익을 시키기 위한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수익권의 설정 또는 이전에 관한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개인(해당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고, 곧 그 허가에 관련된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에 대하여 그 법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사용 수익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을 포함한다)

ニ その法人に農地又は採草放牧地について使用貸借による権利又は賃借権に基づく使用及び収益をさせている農地利用集積円滑化団体（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昭和五十五年法律第六十五号）第十一条の十四に規定する農地利用集積円滑化団体をいう。以下同じ。）又は農地中間管理機構（農地中間管理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五年法律第百一号）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農地中間管理機構をいう。以下同じ。）に当該農地又は採草放牧地について使用貸借による権利又は賃借権を設定している個人

라. 그 법인에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에 대하여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에 근거하여 사용 및 수익을 시키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11조의14에 규정한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동일하다) 또는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중간관리기구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동일하다)에 해당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에 대하여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고 있는 개인

ホ その法人の行う農業に常時従事する者（前項各号に掲げる事由により一時的にその法人の行う農業に常時従事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で当該事由がなくなれば常時従事することとなると農業委員会が認めたもの及び農林水産省令

で定める一定期間内にその法人の行う農業に常時従事することとなることが
確実と認められる者を含む。以下「常時従事者」という。)

마. 그 법인이 하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전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 법인이 하는 농업에 상시 종사할 수 없는 자로 해당
사유가 없어지면 상시 종사하게 될 때 농업위원회가 인정한 자 및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그 법인이 하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시 종사자」라 한다)

へ その法人に農作業（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の委託を行つて
いる個人

바. 그 법인에 농작업(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탁을 하고
있는 개인

ト その法人に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第七条第三号に掲げる事業に係る現物
出資を行つた農地中間管理機構

사. 그 법인에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7조 제3호에서 열거한 사업에 관련
된 현물 출자를 한 농지중간관리기구

チ 地方公共団体、農業協同組合又は農業協同組合連合会

아. 지방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三 その法人の常時従事者たる構成員（農事組合法人にあつては組合員、株式
会社にあつては株主、持分会社にあつては社員をいう。以下同じ。）が理事

等（農事組合法人にあつては理事、株式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持分会社にあつて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の数の過半を占めていること。

3. 그 법인의 상시 종사자인 구성원(농사조합법인에 있어서는 조합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 지분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동일하다)이 이사 등(농사조합법인에 있어서 이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지분회사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음 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의 수(數)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四 その法人の理事等又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使用人（いずれも常時従事者に限る。）のうち、一人以上の者がその法人の行う農業に必要な農作業に一年間に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日数以上従事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と。

4. 그 법인의 이사 등 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고용인(모두 상시 종사자에게만 한한다) 중 1명 이상의 자가 그 법인이 하는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에 1년간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한 일 이상 종사하는 것이 인정될 것

- 4 前項第二号ホに規定する常時従事者であるかどうかを判定すべき基準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

(農地について権利を有する者の責務)

- ④ 전항의 제2호 호(ホ)에 규정한 상시 종사자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한다.

참고 문헌

김기태 외 4인,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2.

김두년, "프랑스 협동조합법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2006.

김수석,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농촌경제 제30권 제4호, 2007.

김정섭, 협동조합기본법시행과 농업법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제21권 제1호, 2014.

김정호 외2인, 농어법인조사 개선방안, 환경농업연구원, 2015.11.

김현희, 농업인·농산물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6.

이철선 외 5인,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

경상남도 합천군 마을조례 참고.

일본 농지법 (昭和27年7月15日法律第229号)

일본 농업협동조합법 (昭和22年11月19日法律第132号)

일본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昭和55年5月28日法律第65号)

프랑스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Article L521-1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top_1000/220484077242.

<http://www.pref.hokkaido.lg.jp/ns/kei/keiei/kieietai/hojin/hojin/what.htm>

http://www.chambres-agriculture.fr/fileadmin/user_upload/National/002_inst-site-chambres/pages/exploitation_agri/Tableau_Societes_exploitation_08012016.pdf

http://www.eknews.net/xe/?_filter=search&mid=France&search_keyword=%EB%86%8D%EC%97%85&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492580

참 고 문 헌

http://www.eknews.net/xe/?_filter=search&mid=France&search_keyword=%EB%86%8D%EC%97%85&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80121

http://www.eknews.net/xe/?_filter=search&mid=France&search_keyword=%EB%86%8D%EC%97%85&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475045